

일반공급 청약 안내

■ 공급대상
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(경기, 서울, 인천)에 거주하는 성인자에게 1인 1주택으로 공급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① 1순위 :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2순위 :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,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청약통장을 개설한 자
- ② 거주지역: 해당지역(용인시) 거주자가 우선하며, 잔여 물량시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합니다.
- ③ 가점산정기준표(모집공고 참조)
 - 청약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,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(별표1)제2호 나목)에 의거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 -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④ 추첨

-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
-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
-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(주택청약종합저축)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인정 시 청약 신청 가능함
-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(전용면적 기준) 변경한 분 신청 요건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(단,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)

■ 당첨자 선정기준

① 순위 ▶ ② 거주지역 ▶ ③ 가점 산정 기준표 ▶ ④ 추첨

■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기준

구분	내용			
①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			
	구분		내용	
	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	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분	만 30세가 된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	
		만 30세 이전 결혼한 분	혼인신고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	
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	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분	만 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		
	만 30세 이전 결혼한 분	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~ 입주자모집공고일		
② 부양가족 인정기준	•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			
	구분	청약자 또는 배우자	내용	
	배우자	부양가족 인정	법정 배우자만 인정	
	미혼자녀	만 30세 미만	공고일 현재 등재	기혼자녀 불인정
		만 30세 이상	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등재	
직계존속	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 시 등재	청약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(분리세대시 배우자, 청약자 모두 세대주)		
• 단,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				
③ 청약 통장가입기간 기준	• 청약 신청 시 자동부여됨			

※ 유주택자는 일반공급 1,2순위만 청약 가능합니다.(유주택자 특별공급 청약 불가)

※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